

속초시 도로명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3. 31.

속 초 시



1. 고시일 : 2014. 3. 31.

2. 고시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,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

※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sokcho.gangwon.kr>) 공고 · 고시란

3. 고시내용 :

○ 도로명 변경 : 1개구간 (붙임조서와 같음)

4. 도로구간(도로명)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	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공고 및 신청인 통보 · 심의 결과 · 내용 및 절차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/2 이상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 동의 만료일부터 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	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새주소공간정보(☎033-639-204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